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일부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위기 등 유사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예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1) 코로나19 등 교육생이 집합교육, 실습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그 교육시간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시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집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훈령 제 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 -----.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1. (현행과 같음)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2. (현행과 같음)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그밖에 부득

	<u>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u>
--	--